국가대표 선발 규정

2015년 1월 14일 제 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국가대표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의2에 의거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또는 본 협회가 국제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 ② 국가대표지도자란 국가대표 훈련기간 동안 국가대표선수를 지도·관리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에서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 ③ 국가대표란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 지도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서 법령 및 대한체육회 규정 등 상위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한다.
- 제4조(국가대표 선발 및 승인) ①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는 본 협회에서 선발하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의 자격을 갖는다.
- ② 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본 협회에 의하여 종목별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선수, 지도자는 선발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종목별 국가대표 자격을 갖는다.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
- 4.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 5.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

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 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 6.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 7.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와 강간, 강제추 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경기력향상위원회

제7조(위원회 설치) 본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 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 2. 국가대표 강화훈련의 실시,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 3.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
- 4.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 사항
- 5. 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6.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대회에 파견할 선수, 지도자, 임원의 선발에 관한 사항
- 7. 훈련용 기구 수급 및 훈련장 선정에 관한 사항
- 8. 훈련에 참가한 지도자, 임원, 선수에 대한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 9. 신인선수 발굴사업 및 팀 창단에 관한 사항
- 10. 훈련기법 도입, 해외우수지도자 초청 및 훈련방법개발에 관한 사항
- 11.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 2. 부위원장 약간 명
- 3. 위원 13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② 위원회에는 국가대표선수출신 1인, 지도자 1인, 팀 관계자 1인, 시도 경기 단체임원 1인, 비경기인 1인, 여성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④ 지도자 및 선수 선발기준 확정 관련 안건은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 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 교체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경기단체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구성시 준수사항) ①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② 정관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임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위촉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실정법, 본 협회 정관 또는 규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지도자

- 제14조(선발기준) ①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는 2급 이상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감독은 5년 이상, 코치는 2년 이상의 해당 종목 지도 경력이 있어 야 한다. 다만,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올림픽메달리스트는 경우 경력과 상관없이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임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너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및 지도 경력을 반드시 요하지 않으나,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를 우대한다.
- 제15조(국가대표 지도자 선발방법)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 ② 선발과정 및 결과는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 등 선발근거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용 및 재임용 시, 해당 지도자의 평가보고서를 작성, 평가하고,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6조(임기 및 역할)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신분 보장과 안정적인 선수 관리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임기(계약기간)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대표 감독은 코치 및 선수 선발 선임 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감독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임무)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훈련 및 관리
- 2.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 3. 각 경기단체별 국가대표 훈련대상 선수선발 참여
- 4. 경기력 부진선수 교체건의
- 5. 국가대표 훈련참가자의 해외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 시 인솔
- 6.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
- 7. 선수의 합숙생활에 대한 지도, 감독
- 8.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제4장 선 수

- 제18조(국가대표선발) ①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는 본 협회가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선발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본협회가 선발하는 국가대표선수는 위원회에서 본 협회가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선발되고, 위원회의 추천 후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가 할 수 있다.
- 제19조(선발절차) ① 본 협회가 사전에 정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통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일정 등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선발기준은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경기단체별 국가대표 선발기준은 최소한 국가대표 선발일 6개월 전에 확정하여 해당경기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선발기준) ① 해당 연도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기준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부상, 경기력 부진 등 결원에 따른 교체 시 감독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 선발전 최종성적 기준으로 상위성적 선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지도자 추천에 따른 선발은 최소화하며, 이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소속팀으로부터의 차출 시 대표선수의 원소속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선발세부기준) ① 선발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랭킹 포인트를 적용하여 국가대표선수를 선발하는 전국대회는 3경기 이상 경기가 성립되어야 랭킹 포인트로 인정한다.
 - 나) 랭킹 포인트(P)는 출전 척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한다.
 - 1. 랭킹 포인트(P) : 15척 출전 경우 1위 (15점) / 2위 (14점) / ... 15위 (1점)
 - 2. 외국인선수가 참가한 경우 외국인 선수의 순위를 제외하지 않는다.
 - 다) 국가대표선수가 전국대회 기간 중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경우 파견 직전 랭킹 순위에 해당하는 랭킹 포인트를 받고, 당해 대회 참가선수의 성적은 순위대로 인정한다. 단, 국제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의 순위보다 앞선

순위는 받지 못한다. 즉, 직전 랭킹이 3위인 선수는 불참대회에서 3위 랭킹포인트를 받고, 당해 대회에서 1위를 한 선수는 3위, 2위를 한 선수는 4위의 랭킹 포인트를 받는다. 하위 등위의 선수가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될 경우 그 점수는 0점 처리한다.

- 라) 2인승 이상 종목에서 스키퍼와 크루가 갈라지면 스키퍼의 랭킹에 따르되 최종 랭킹 포인트의 20%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단, 본 협회가 인정할 만한 사유 일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마) 합계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벌점이 적은 순으로 결정한다.(버리는 점수 제외) 바)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추천

선발할 수 있다.

- 사)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에 무단 불참 및 훈련불성실로 퇴 촌당하면 해당월로부터 2년간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한다. 단, 부상의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아) 부상이나 기타 사유로 강화훈련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선수는 경기력향상위 원회에서 판단하여 선발 및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 제22조(불공정 행위)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선발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로 징계를 받은 자는 국가대표 강화훈련에서 제외한다.
- 제23조(국가대표선발 규정 제·개정) ①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한다.
- ② 본 협회가 제·개정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제·개정 후 즉시 대한체육회에 보고한다.
- 제24조(국가대표 선발규정의 개정 시기) ① 확정된 경기단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개정은 규정 제·개정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에 개정할 수 있으며, 해당경기단체에서 이사회 의결, 확정 후 개정 내용을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다만,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1년 이내제·개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 제25조(자료의 보관) 국가대표 선발기준, 과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

의제기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분석지, 및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강화훈련) 국가대표 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5.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결격사유)의 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행위로 형벌 또는 징계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속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부로 기존의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은 폐기한다.